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8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정재·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유영하·유용원 윤상현·윤영석·윤재옥 윤한홍·이달희·이만희 이상휘·이성권·이종다 이인선·이종배·이종욱 이철규·이헌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장동혁 정동만·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조지연·주진우 주호영·진종오·최보윤 최수진·최은석·최형두 의원(108인)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 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과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
-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 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지 정 또는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 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법률 제 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아이돌보미"란 제7조"를 ""아이돌봄사"란 제7조제1항"으로,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을 "취득한"으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을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를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결격사유)"를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로 활동할"을 "아이돌봄사가 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을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아이

돌봄사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을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아이돌봄사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 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

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인성 검사 및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는"을 "아이돌봄사는"으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를 "제7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으로,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을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돌보미가"를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로, "아이돌보미 또는"을 "아이돌봄사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로, "지정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를 "기간·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을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 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 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 센터로 지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한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과에 근무할 수 없다.
 - 1.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6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다른 결격 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 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서비스기관 지정취소"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등록취소"로, "서비스기관의"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한다.

제13조의 제목 "(서비스기관의 임무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을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이 폐업"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으로, "서비스기관이 없거나"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정 취소 등)"을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 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1.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정"을 각각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사"로, "아이돌보미에"를 "아이돌봄사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을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8.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평가)"를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제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을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 만족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으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취소"를 "등록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1.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결격사유,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제26조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으로 한다.

제28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운영 현황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으로, "실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서비스기관 및 제7조제4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으로, "업무위탁"을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으로, "아이돌

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31조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아이돌보미 자격정지)"를 "(아이돌봄사 자격정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돌보 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아이돌보미 자격취소)"를 "(아이돌봄사 자격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아이돌보미로 활동한"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3항"으로, "서비스기 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자
- 6.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한 자

제37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아이돌보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본다.
- 제4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서비스기관 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 중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23호 중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로 한다.
 -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6조제1항제23호 중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아이돌보미"란 제7조</u> 에 따	4. "아이돌봄사"란 제7조제1항
른 자격을 <u>갖춘 사람으로서</u>	<u>취</u> 두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	
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	
<u>봄서비스를 제공하는</u> 사람을	
말한다.	<u>.</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란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u>를 말한다.</u>
제2장 <u>아이돌보미의 직무 등</u>	제2장 <u>아이돌봄사의 직무 등</u>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
<u>무)</u> ① <u>아이돌보미</u> 는 여성가족	<u>무)</u> ① <u>아이돌봄사</u>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u>아이돌보미</u> 는 다음 각 호의	② <u>아이돌봄사</u>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③ <u>아이돌보미</u>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u>아이돌보미</u>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⑤ <u>아이돌보미</u>는 보호자의 육 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u>결</u>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아이돌보미로 활동할</u> 수 없다.
 - 1. <u>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u>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9. (생략)
-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

③ 아이돌봄사
④ <u>아이돌봄사</u>
⑤ <u>아이돌봄사</u>
<u>.</u>
제6조(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
<u>o}</u>
<u>이돌봄사가 될</u> .
1. <u>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u>
<u>견인</u>
2. ~ 9.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사가 되려는

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u>위하여</u> 수사기 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여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성가족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야 한다.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인
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 <u>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u> 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 5. 6. (생략)
-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 ③ 아이돌봄사가 ------은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 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 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

<신 설>

<u><신</u> 설>

- 1. ~ 3. (현행과 같음)
- 4. 아이돌봄사-----
- 5. 6. (현행과 같음)

<u><</u>삭_제>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사의 자격 관리 업무의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 는 민간기관 · 단체 등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 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분 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

<신 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시 · 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 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인성 검사 및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사는-----제7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자격 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하 여서는-----.

- ②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이돌봄사 또는----
-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 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지정 기준----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수교육) ① 여성가족부	제10조(보수교육) ①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u>아이돌보미</u> 의 전문성	<u>아이돌봄사</u>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④ <u>7</u>]
<u>기간·방법 등에 관하여</u> 필요	<u> 간·방법 및 그 밖에</u>
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u>아이돌</u>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u>아이돌</u>
<u>보미</u> 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	<u>봄사</u>
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	
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	
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	②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
<u>광역지원센터는</u> 제1항에 따른	비스제공기관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	
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	
을 <u>아이돌보미</u> 로 활동하게 하	<u>아이돌봄사</u>
여서는 아니 되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 지 터) ① (생략)
 -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2. (생략)
 - 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 옂
 - 5. 아이돌보미 자격 · 이력 · 채 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 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 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 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 8.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 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선
터)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u>아이돌봄사</u>
4. <u>아이돌봄사</u>
5. <u>아이돌봄사</u>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8. (현행과 같음)
-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 는 민간기관 · 단체 등을 제1항 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

-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 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

 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

 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

 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

 치
 - 3. 지역 내 <u>아이돌보미</u>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 4. ~ 6.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한 구제석인 설자와 방법 능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선
터) ①
아이돌봄사
②
∠ λ l − ¬l \ _

<삭 제>

- 3. -----<u>아이돌봄사</u>-----
- 4. ~ 6.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1조<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지정 등) ① 시·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 다.

- ②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 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
-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 여야 한다.
- ⑤ (생략) <신 설>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 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 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른 아이돌</u>
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u>한다)</u>
③ <u>아이돌봄서</u>
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u>절차</u>
<u>.</u>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u>-</u>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

<신 설>

<신 설>

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 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 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 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휴업 및 폐업 등)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 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아

<신 설>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 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 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 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 1.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 2. 제6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다른 결격 사유 확 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 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으로 본다.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도지 서비스 안내 등) ① ------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및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 등을 서비스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u>서비스기관</u>의 장은 해당 <u>아</u> 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u>아이돌보미</u>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저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u>서비스기관</u>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지정취소·등록취소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u>
관의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u>o</u> }
 이돌봄사
③
<u>아이돌봄사</u> -
세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임무 등) ① 아이돌봄서비
스제공기관은 여성가족부렁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봄
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 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 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 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신 설>

- ⑤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 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u>아이들품사</u>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 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 돌봄사와 아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 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 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⑦ <u>서비스기관</u>은 필요한 경우 <u>아이돌보미</u>에게 심리상담을 제 공할 수 있다.
-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u>서비스기관</u>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u>아이돌보미</u>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 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u>서비스기관</u>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u>아이돌봄사</u>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
선 제공)
<u>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u>
<u>기관</u>
<u>아이돌</u>
<u>봄사</u>
1. ~ 8.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
이돌봄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u>.</u>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 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u>서비스기관</u> 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u>서비스기관이 없</u> 건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 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 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 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제17조<u>(지정 취소 등)</u> <u><신 설></u>

제16조 <u>(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u>
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u> 등</u>)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이 폐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 없거나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 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 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u>지정</u>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u>지정</u>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u>받은</u> 경우
- 2.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
- 3. <u>서비스기관</u>이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

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
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
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
력, 시설, 운영 등 기준에 미
달하는 경우
<u> </u>
<u> </u>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u>지정 또는 등록</u>
<u>지정 또는 등록</u>
1
<u>받거나 등록을 한</u>
<u>× 1 × 1/2</u>
<삭 제>

3.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을 거부한 경우

- 4. 5. (생략)
- 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는 등 <u>아이돌보</u> 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 센터 또는 서비스기관으로 다 시 지정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 4. 5. (현행과 같음)
-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 미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 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 ----아이돌봄사에

-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8.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이 현저하게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 록의 취소 처분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삭 제>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 기관 관리·평가)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선 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 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 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 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제18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 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u>아이돌보미</u>에 대한 보호자 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
	록 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
	부렁으로 정한다.
제	18조(광역지원센터 및 지정아
	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
	<u>평가)</u> ①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제11조제3항에 따른
	② <u>지정아이돌</u>
	봄서비스제공기관
	<u>.</u>
	③・④ (현행과 같음)
제	1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u>관 만족도 조사)</u> ①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아</u>
	<u>이돌봄사</u>

② (현행과 같음)

-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 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연행과 같음)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으 며, 수집·보유·이용하는 정 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 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 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6조, 제10조의2 및 제32조 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 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정보
 -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
 4,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 정취소에 관한 정보
 <신 설>

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제
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
돌봄사 결격사유, 자격, 건강
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에 관한 정보
2제11조,
<u>제11조의2, 제11조의3</u> <u>아</u>
<u>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u>
록 등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

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

爿

- 3. (생략)
- 4. 제18조의2에 따른 <u>아이돌보</u>
 <u>미</u>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5. ~ 7. (생 략)
- ③ ~ ⑧ (생 략)
-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 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 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선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명할 수 있다.
 - 1. ~ 3. (생략)
-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 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u>—</u>		
3. (현행과 같음)		
4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비용의 보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		
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 및 명령)		

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 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 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u>위하여 3년마다</u>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 조 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u>아이돌보미</u>,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관리·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② (생략)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 저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
조사) ①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
기 위하여 3년마다 운영 현황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u>아이돌봄사</u>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비밀누설금지)

센터, 광역지원센터, <u>서비스기</u> 관 및 제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u>업무위탁</u>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사람, <u>아이돌보미</u>는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청문)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의 지정</u>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 1. (생략)
-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아이돌봄서비
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
어무이 이타 ㄸ느 기
<u>업무의 위탁 또는 지</u>
정
<u>아이돌봄사는</u>
제31조(청문)
제17조제2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
<u>정 또는 등록</u>
.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아이돌봄사
•
1. (현행과 같음)
2. <u>아이돌봄사</u>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 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4. (생 략)

-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 경성가족부장관은 <u>아이돌보미</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 1. (생략)
 - 2. <u>아이돌보미</u>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 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 5. (생략)
 -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 분기간에 <u>아이돌보미로 활동</u> <u>한</u> 경우

7. (생략)

제35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현행과 같음)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u>아이돌봄사</u>
1. (현행과 같음)
2. <u>아이돌봄사</u>
3. ~ 5. (현행과 같음)
6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
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7.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생 략)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 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
-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 📗 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은 자

<신 설>

6. • 7. (생략)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제3항----------<u>아이돌봄</u> 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 서비스제공기관-----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자 6.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 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u>다시 지정받거나</u> 등록한 자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을 하지

	<u>아니한 자</u>
<u><신 설></u>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
	<u>반한 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